

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 안내

□ 주요내용

- (근거)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,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
- (대상)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
 - ※ '15.3.31. 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
- (내용)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*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공시
 - * 별도 시스템 구축 전까지 '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'에 공시 예정
 - ※ (공시내용) 성명, 퇴직일,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, 취업 제한기관명, 취업일, 직위 또는 직급 등

□ 취업사실 신고

- (대상)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
 - ※ '15.3.31. 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
- (시기)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
- (내용) 성명, 퇴직일,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·직급, 취업제한 기관명, 취업일, 직위·직급 등을 포함한 취업사실 신고
- (제출서류) 취업사실 신고서(서식1), 취업사실 증명자료(재직증명서 등)
- (제출방법) 서면신고 ※ 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 등 이용
- (절차) 퇴직공직자 → 퇴직 전 소속기관장 →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→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
- (위반 시 제재)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<서식1>

취업사실 신고서
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
	퇴직 전 소속	직위(직급 등)	
	퇴직일	휴대전화번호	
	주소		
취업사실	취업 기관명	직위(직급 등)	
	취업일	취업경로	
과거 취업사실	취업 기관명	직위(직급 등)	근무기간
			~
			~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 소속 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작성방법

-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, 해당 기관명과 직위(직급), 근무기간(취업일과 퇴직일)을 적으십시오.

업무 처리절차

